

【 2 】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증개경조례안

제출년월일 : 2004. 3.

제출자 : 양주시장

□ 개정이유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 양주시에서 기 개발한 CI 및 캐릭터 등 특허사업(의장, 상표 등)에 대한 권리 확보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권리 구제는 물론 우리시에서 추진하게 될 특화사업등에 대한 특허출원과 특화산업 발굴시 자문을 받기 위해 고문변리사를 위촉·운용코자 함

□ 주요골자

1.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제명)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양주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로 함

2. 고문변리사운영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양주시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양주시고문변호사 등(이하 “고문변호사·변리사”라 한다)”로 함

3. 고문변호사·변리사의 위촉인원을 정함(안 제2조)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를 “개업중인 변호사·변리사중에서 변호사는 2인이내, 변리사는 1인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함

4. 시장의 자문사항에 변리업무를 신설함(안 제3조 제3항)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등록 등 지적재산권업무와 관련한 사항”

5. 고문변리사의 수당지급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4조)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만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고문변호사·변리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만원이내

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함

6. 소송비용지급기준에 특허소송을 추가함[별표]

[별표]의 소송비용지급기준 소송별란의 “민사소송”을 “민사·특허소송”으로 함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양주시고문변호사” 다음에 “ 및 변리사”를 삽입한다.

제1조증 “양주시고문변호사” 다음에 “등”을 삽입하고, (이하 “고문변호사” 다음에 “·변리사”를 삽입한다)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변리사중에서 변호사는 2인이내, 변리사는 1인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 증 “고문변호사” 다음에 “·변리사”를 삽입한다.

제3조증 “고문변호사” 다음에 “·변리사”를 삽입하고, “3호”를 “4호”로 하며,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히, 실용실안 의장 또는 상표등록 등 지적재산권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4조 제1항 및 제2항증 “고문변호사” 다음에 “·변리사”를 삽입한다.

[별표]의 소송비용지급기준 소송별란증 “민사” 다음에 “·특허”를 삽입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와 수임료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 표]

소송비용지급기준(제4조 제1항 관련)

구분 소송별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처 구비서류
	내용	착수금	증소사례금	
민사 특허 소송	1. 신청사건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50범위내	좌동	청구서
	2. 본안사건 ·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 65만원이내	· 완전승소는 착수금의 100분의150 · 60%이상 승소할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 청구서 · 소가증명원 · 사건확정증명원 · 소취하서증 · 해당서류
	·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물가액 기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규칙(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 (다만, 소송물가액이 1,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65만원을, 소송물가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455만원으로 한다.)	화해의 성립, 인력, 소취하(쌍방취하 포함) 경우 착수금의 100분의 50 (다만, 조건부 취하는 제외)	
	3.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50범위내	상동	상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 · · · · <u>고문변호사 및 변리사</u> · ·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양주시고문변호사</u> (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양주시고문변호사 등</u> (이하 "고문변호사·변리사"라 한다) · · · · ·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u>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u> ② <u>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u> ③ <u>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u>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u>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변리사 중에서 변호사는 2인이내, 변리사는 1인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u> ② <u>고문변호사·변리사의</u> · · · · · ③ · · · · · <u>고문변호사·변리사</u> · · · · ·
제3조(고문사항) <u>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u> 1. (생략) 2. (생략) (신설) 3. (생략)	제3조(고문사항) <u>고문변호사·변리사</u> ·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특히, 실용실무 의장 또는 상표등록 등 지적 재산권업무와 관련한 사항</u>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4조(소송비용등) ① <u>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u> ② <u>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만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u>	제4조(소송비용등) ① <u>고문변호사·변리사</u> · · · · · ② <u>고문변호사·변리사</u> · · · · ·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고문변호사등(이하 “고문변호사·변리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시장은 개업증인 변호사·변리사중에서 변호사는 2인이내, 변리사는 1인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변리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변호사·변리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때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수행상 필요한 때
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
 - 가. 불변기일의 도과
 - 나. 소송당사자와의 담합
 -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 라.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때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변리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3. 특히, 실용실안 의장 또는 상표등록 등 지적재산권업무와 관련한 사항
4.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소송비용등) ①고문변호사·변리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고문변호사·변리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만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와 수임료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구분 소송률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사 구비서류
	내용	착수금	충소사례금	
	1. 신청사건 · 민사소송에 준함		상동	상동
	2. 본안사건 · 소송불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소송불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불가 액기준)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서 · 소가증명원 · 사건확정증명원 · 소취하서증 해당서류
행정 소송	3. 환송심	상동	상동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대 : 실액 · 송달료 : 실액 · 검증비 : 실액 · 감정료 : 실액 · 출장비 및 여비 : 양주시여비조례 중 “5급공무원 해당액” · 기타비용 : 실액(다만, 검증비, 감정비, 소송대리인 수행시 3만원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서 · 인지보정 · 명령서 · 검증비, 감정료 등 납부명령 사본 각 1부.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정 2003. 10. 19 조례 제3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때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수행상 필요한 때
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
 - 가. 불변기일의 도과
 - 나. 소송당사자와의 담합
 -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 라.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때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차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소송비용 등) ①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만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와 수임료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분 소송별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시 구비서류
	내용	착수금	승소사례금	
민사 소송	1. 신청사건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범위내	좌동	· 청구서
	2. 본안사건		· 완전승소는 착수금의 100 분의 150	· 청구서 · 소가증명원 · 사건확정증명원 · 소취하서증
	· 소송물가액 을 산정할 수 없는 경 우	· 65만원이내	· 60%이상 승 소할 경우 착 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해당서류
	· 소송물가액 을 산정할 수 있는 경 우(소송물 가액기준)	· 변호사보수의 소송 비용산입에 관한규 칙(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다만, 소송물가액이 1,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65만원 을, 소송물가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에는 455만원으로 한다.)	· 화해의 성립, 인락, 소취하 (쌍방취하 포 함) 경우 착수 금의 100분의 50(다만, 조건 부 취하는 제 의)	
3. 환송심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범위내	상동	상동	

양주시고문법호사운영조례

구분 소송별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시 구비서류
	내용	착수금	승소사례금	
행정 소송	1. 신청사건 · 민사소송에 준함	상동	상동	
	2. 본안사건 · 소송물가액 을 경할 수 없는 경우 · 소송물가액 을 산정할 수 있는 경 우(소송물가 액기준)	상동		· 청구서 · 소가증명원 · 사건확정증명원 · 소취하서증 해당서류
	3. 환송심	상동	상동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대 : 실액 · 송달료 : 실액 · 검증비 : 실액 · 감정료 : 실액 · 출장비 및 여비 : 양주시여비조례 중 "5급공무원 해당액" · 기타비용 : 실액(다만, 검증비·감정비·소송대리인 수행시 3만원을 별도로 지급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서 · 인지보정 명령서 · 검증비, 감정 료 등 납부 명령 사본 각 1 부.